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,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 내용

- 가.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반영,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5호(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)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
- 나. 2021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(용자업무취급기관)에 대한 일몰을 해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3. 4. 11. ~ 5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6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제30조(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) ① 법 제52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~ ④ (생략)	제30조(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제66조의5(규제의 재검토) ① (생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3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용자업무취급기관: 2016년 1월 1일 2. (생략)	제66조의5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 제66조의5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삭 제> 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	
연 락 처	(044) 202 - 7559